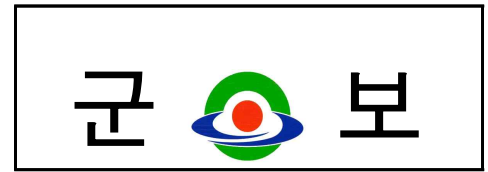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4호 2023. 9. 25.(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68호)
- 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예천군 조례 제2569호)
-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570호)
-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예천군 조례 제2571호)
-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예천군 조례 제2572호)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73호)
-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574호)
-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575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68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24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
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시간 연가로 전환 조항 신설 (안 제24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적용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이월·저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조항 신설 (안 제25조)

-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69호

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

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및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법령이 폐지(1994.12.31. 및 1998.04.15.)됨에 따라 조례 존치 근거 상실
-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예천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70호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이거나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

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장례식장, 장의차량,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장례 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
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
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
한 장례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에게 지원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
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처리 결과 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등)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가 지급 받은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무연고자이거나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장례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 지원 대상 : 관내 사망한 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물품, 장례식장 사용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 장례수행자는 장례 후 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장례지원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장례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라. 장례지원 점검 및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신청인, 장례수행자가 지급받은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하고,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지원 목적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점검
- 장례수행자 및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71호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센터 등을 한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입주시설”이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운영되는 개별 시설을 말한다.
3. “입주시설 관리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운영되는 개별 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합커뮤니티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040에 둔다.

제4조(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
2. 호명면 행정복지센터출장소
3. 가족센터
4. 건강증진센터
5. 청소년문화의 집
6. 지역아동센터
7. 다함께돌봄센터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 카페
10.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며,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적정하게 확보·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허가하거나 위탁관리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시설별 별도 운영하며, 군수는 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주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신청인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시설 관리자는 허가 시에 시설물의 관리와 설비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사용 신청 및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신청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신청일과 시설 사용예정일이 동일한 날인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예천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청인이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신청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

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입주시설별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별표 1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1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입주시설에서 정한 별도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대시설 사용료 등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냉·난방 사용료	1회	20,000원	
무대조명	1회	20,000원	
음향시설	1회	20,000원	
빔프로젝터	1회	10,000원	

【별표 2】

사용료 감면(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및 문화강좌, 공연 등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면제	
· 만65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정 및 경상북도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50%	

[별지 제1호서식]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성명 (단체명및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용시설			
사용부대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사용인원명
변경신청 사항	구분	당초	변경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성명 (단체명및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용시설			
사용부대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사 용 료			
변경사항			
허가조건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제정이유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소통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규정(안 제4조)

- 공동육아나눔터, 호명면 행정복지센터출장소, 가족센터, 건강증진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카페 등으로 구성

나.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안 제6조)

- 군수가 관리·운영하며, 단체 또는 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 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가능

다. 시설의 사용 신청(안 제8조)

- 시설 이용 시 입주시설 관리자의 허가 필요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라. 사용료 징수 및 감면(안 제12조)

- 입주시설별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
-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나 감면 사항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72호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8호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 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6.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청소년문화의 집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040)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개발 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4. 청소년 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
5.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예천군 직영으로 관리·운영한다.

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천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시설의 개방 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예천군 관내 거주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문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의 행사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⑤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장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시설 사용의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8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청소년단체 등이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개최 전액 면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전액 면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 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
2.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정기휴관) ①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법정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2. 매주 월요일
3. 시설물의 안전 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②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2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장비 사용료(제7조 관련)

1. 일반 사용료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원)		비 고
				청소년	일반	
2층	쿠ќ룸	1회 4시간		무료	20,000	
	강의실	1회 2시간		무료	10,000	
	아트룸	1회 2시간		무료	20,000	
3층	댄스실	1회 2시간		무료	20,000	
	동아리실	1회 2시간		무료	10,000	
	체력단련실	1일(인당)		무료	3,000	*월 사용료 50,000원 *13세 미만 사용불가
4층	음악실	1회 2시간		무료	20,000	
	실내체육관	1회 2시간(인당)		무료	2,000	
	다목적강당	구분	시간	무료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일	09:00~20:00		140,000	180,000
		오전	09:00~12:00		45,000	60,000
		오후	13:00~17:00		60,000	75,000
		야간	18:00~20:00		70,000	90,000

※ 비고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목적강당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일반인은 15시이전만 이용 가능하다**
-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경우 구성원의 50%이상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요금을, 50%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요금을 적용한다.
-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이용 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일반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초과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전용 사용료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체육 행사	체육 외 행사
실내체육관	1일	30,000원	50,000원
※ 비고 1.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시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행사”란 운동 경기만을 말하며, 무대사용, 공연 등 부대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육 외 행사로 본다.			

3. 부대시설 사용료

품명	구분	단위수량	사용료
냉·난방기	1회	-	20,000원
무대조명	1회	1조	20,000원
음향	1회	1조	20,000원
빔프로젝터	1회	1대	15,000원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제7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생년월일 (법인번호)	
	성 명 (단체명)	연락처	
신 청 내 용	사용일시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사용목적	행사명, 주최, 주관, 행사내용 등 기재	
	사용인원		
	사용시설		
	부대시설	☐ 빔프로젝터 ☐ 냉·난방기 ☐ 무대조명 ☐ 음향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제7조 관련)

사 용 자	주 소			
	성 명 (단체명)		전화번호	
행 사 명				
허가일시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허가시설 (변경내용)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 용 료	금 액			
	산출내역			
허가조건	1.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규정을 준수한다. 2. 현수막, 안내문 등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3.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4.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5.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6.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7.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제정이유

-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안 제4조)

-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개발 운영
- 청소년 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
-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나.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안 제5조)

- 예천군 직영으로 관리·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가능

다. 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등(안 제7조)

- 예천군 관내 거주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가능

라. 청소년문화의 집 정기휴관(안 제12조)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매주 월요일, 시설물의 안전 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73호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라. 영업의 양도나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도나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기 전에 해당 영업에 행한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30	50	1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및 별표)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 (안 별표)

- 「지역보건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2천만원, 3차 위반 시 3천만원 과태료 부과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74호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예천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예천군민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예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

하여 접종 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종 기관을 방문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8조(환수)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9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군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계약목적		위탁의료기관은 예천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위탁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사 용 ※ 사용시 업체명 : _____ [] 미사용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 위탁계약 조건 >

위탁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군수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4.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5.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경상북도 예천군-○○호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귀 기관을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 예천군수

직인

◇제정이유

-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천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예천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

나. 예방접종 지원대상, 지원내용(안 제2조~안 제3조)

- 지원 대상 : 예방접종일 기준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예천군민
- 예방접종 비용 지원 횟수는 1회로 한정

다. 예방접종 지원절차(안 제4조)

- 신청자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 방문,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
- 접종 기관은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라. 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해지 등(안 제5조~안 제7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 및 계약 조건 미준수시 계약 해지

마. 지원비 환수(안 제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2회 이상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바.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안 제9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급여 신청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75호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증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

를 말한다.

4. “아동비만예방사업”이란 아동들이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 활동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아동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책, 교육, 사업,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 대상 시설, 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비만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만예방 시범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과제, 방법 및 평가
3.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군수는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강사) ① 비만예방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

구되는 경우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예천군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 및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학교, 아동, 비만, 아동비만예방사업에 대한 용어 및 정의 규정

나.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대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7조)

- 사업 추진 대상 : 아동 대상 시설, 학교
- 예천군수는 비만 예방 시범학교를 지정·운영 및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 비만예방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 강사 활용 가능